

— 구미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(안)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옥외광고물 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위해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시의 사무로 이관되어 옥외광고물 관리법령과 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제정.

3. 주요내용

-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(제2조)
- 옥외광고물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 등(제3조, 제4조)
- 안전도검사업무 위탁받을 수 있는 자와 위탁절차 및 검사절차(제5조~제7조)
- 현수막 지정게시대, 지정 게시판·벽보판 위탁(제8조)
- 옥외광고물의 신고, 종사자교육,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(제10조~제12조)
-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·신고수수료, 안전도검사 수수료(제13조)
-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(제14조, 제15조)

4. 참고사항

-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표준안
- 옥외광고물관리법령,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

5. 검토의견

- 옥외광고물의 합리적 규제와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개정으로 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임.

- 경상북도의 시·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제정하는 구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임.
-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 및 신고사항,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도검사와 지정게시판위탁,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임.
- 상위법이나 기타 조례에 저촉사항 없음.